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번호	제190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발의년월일 : 1999. 7. 6

발 의 자 : 이재영 의원 외 20인

1. 주 문

○ 원미환경[구 (주)위생공사]에 대한 부천시의 청소도급 시행에 있어 지원받은 시예산의 불법진용 및 차량장비와 근로인원에 대한 허위보고에 따른 시예산의 부당한 지원에 대한 부천시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심층있는 조사로 인한 시민적 의혹을 일순 해소하고 나아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마련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지난 4월 발표된 MBC 2580의 중앙언론 보도에 따라 부천시와 원미환경[구 (주)위생공사]의 청소
도급 계약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따른 진상규명과

나.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으나 무혐의 처리 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는 도급방식에서의 대항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정책상 잘못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는 80만 부천시
민의 월세인 세금에 관련한 문제인 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의회에서 청소행정수립의 적정성,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위생공사의 도금액 요청의 적절성 등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여 시민의 의구심
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다. 비록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감사원 감사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본
건은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 중앙언론의 보도내용과 시
민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이 사실로 입증될 때 이는 부천시의 의지에 따라서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에 대하여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바 예산낭비의 사례를 방지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4. 기타 관련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 9명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1999. 7. 20~10. 31